성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『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,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고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나. 한옥마을 지정 공고(안 제4조)
다. 한옥의 등록 및 보존기간(안 제5조 ~ 제6조)
라. 한옥 보조금의 지원 및 결정(안 제7조 ~ 제8조)
마.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[2017. 10. 16. ~ 11. 6]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『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,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고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제정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3조에서는 한옥에 대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한옥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마을 중에 건축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하였고,
- 안 제5조, 제6조에서는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받은 한옥은 5년 이내에 철거·멸실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내 최대 4천만원까지로 하며,
- 안 제8조, 제9조에서는 지원 결정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실제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10에서 제14조까지는 공사추진 및 보조금 지원 시기와 환수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『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한옥의 보존·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한옥자산 육성으로 건축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